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등기번호	642075			
등록번호	110111-6420759			
_	주 <mark>식회사 마스턴제25</mark> Ltd.)	호위탁관리부동산투	『지화사 (MASTERN 25 REIT Co.	,
2	주식회사 케이비운용	제1호위탁관리부동	산투자회사	2021.09.14 변경 2021.09.15 등기
본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티	내해란로 302, 4층(역삼동, 피씨에이라이프타워)	
	서울특별시 서초구 7 서초사옥)	강남대로 465, 20층	,21층(서초동, 교보생명보험(²	^{2019.11.16} 변경 2019.11.18 등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	1층(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u>2021.10.12</u> 변경 2021.10.12 등기
공고방법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등	구 머니투데이에 게재한다.	· .
1주의 금액	금 5,000 원			
발행할 주~	식의 총수 100,000,	000 주	IL Q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 및 각각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에이종종류	총수 총수 주식	60,000 주 60,000 주 4,470,000 주 250,000 주 3,220,000 주		 2017.11.09 변경 2017.11.09 등기
비중종류주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에이종종류	총수 주식	1,000,000 주 4,860,000 주 250,000 주 3,320,000 주		2021.09.14 변경 2021.09.15 등기
비종종류주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에이종종류 비종종류주	총수 	1,290,000 주 7,010,000 주 550,000 주 5,060,000 주	금-24,300,000,000-원	2021.09.15 변경 2021.09.15 등기
	시	1,400,000 주	금 -35,050,000,000 -원	

발행주식의 그 종류 및 ^기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보통주식	300,000 주		2021.10.05 등기
에이종종류주식	1,840,000 주		
비종종류주식	400,000 주	금 12,700,000,000 원	

목 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1.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 1. 부동산의 개발
- 1. 부동산의 임대차
- 1. 증권의 매매
- 1. 금융기관에의 예치
- 1.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 1.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관리·처분

관리·처분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공기녕 721216-******
2020 년 06 월 18 일 중임 2020 년 06 월 22 일 등기
2021 년 10 월 12 일 사임 2021 년 10 월 12 일 등기
대표이사 공기녕 72121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70, 104동 301호(창곡동, 아트
리바 푸르지오)
2020 년 06 월 18 일 중임 2020 년 06 월 22 일 등기
2021 년 10 월 12 일 사임 2021 년 10 월 12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문철주 801117-******
2020 년 06 월 18 일 중임 2020 년 06 월 22 일 등기
2020 년 00 월 16 일 상담 2020 년 00 월 22 일 동기 2021 년 10 월 12 일 사임 2021 년 10 월 12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시 윤제두 800910-******
2017 년 11 월 09 일 사임 2017 년 11 월 09 일 등기
<u>감사 이석연 690113-******</u>
2020 년 06 월 18 일 중임 2020 년 06 월 22 일 등기
2021 년 10 월 12 일 사임 2021 년 10 월 12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시 정소희 770917-******
2017 년 11 월 09 일 취임 2017 년 11 월 09 일 등기
2020 년 12 월 10 일 중임 2020 년 12 월 11 일 등기
2021 년 10 월 12 일 사임 2021 년 10 월 12 일 등기
사내이사 조병창 590801-*****
2021 년 10 월 12 일 취임 2021 년 10 월 12 일 등기
대표이사 조병창 59080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71, 106동 1401호(용암동, 건영아
파트)

등기번호	642	2075						
2021 년	년 10 월	12 일	취임	2021 년	10 월	12 일	등기	
기타비상무	이사 윤성	필 67111	3-**					
2021 ද	년 10 월	12 일	취임	2021 년	10 월	12 일	등기	
기타비상무	이사 이창	·훈 63061	6-**	****				
2021 년	년 10 월	12 일	취임	2021 년	10 월	12 일	등기	
감사 박성역	<u> 7</u> 90223-	-****						
2021 닉	년 10 월	12 일	취임	2021 년	10 월	12 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에이종종류주식

주식의 종류 : 에이종 종류주식

발행주식의 내용 : 2017년 11월 09일 발행 에이(A)종 종류주식 3,220,000주

- 1. 회사가 발행할 에이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다.
- 2. 회사는 에이종 종류주식을 칠천만(70,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
- 3. 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 ①화우선으로,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6.5%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단, 최초 사업연도에 발행한 에이종 종류주식에 관하여는 주금납입일 익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다만, 본 호는 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이하 "매각사업연도"라 한다)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만 적용하기로 한다.
- ②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전호에 따른 에이종 종류주식을 우선 배당한 후 연 18%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단, 최초 사업연도에 발행한 비종 종류주식에 관하여는 주금납입일 익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에이종 종류주식의 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다만, 본 호는 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이하 "매각 사업연도"라 한다)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만 적용하기로 한다.
- ②제①호 및 제②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바레하여 배당한다.
- 4. 어느 사업연도에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제3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에이종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 다만, 본 항은 매각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만 적용하기로 한다. 5. 어느 사업연도에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후 비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제3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제3항에 정한 에이종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 후 비종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에 추가하여 배당한다. 다만, 본 항은 매각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만 적용하기로 한다.
- 6. 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에는 다음과 같이 배당한다.
- ①처분이익(아래에 정의됨)이 0보다 큰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 가. 배당가능이익 중 처분이익을 에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매각 사업연도 이전까지 누적된 미배당분을 최우선으로 배당한다.
- 나. 배당가능이익 중 처분이익을 가목에 따른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 후 잔여금액으로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매각 사업연도 이전까지 누적된 미배당분을 최우선으로 배당한다.

642075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처분이익은 그 20%는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55%는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25%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 ※ 본 조에서의 "처분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당해 부동산의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 당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된 제반 비용(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관련 수수료를 포함한다),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된 주식발행비용, 매각 시점 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배당금 합계액, 매각 이전 사업연도별 당기순손실(감가상각비제외)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②매각 사업연도에 처분이익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이러한 배당가능이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 가. 우선 에이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비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라. 다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매각 이전사업연도의 최종일 익일부터 부동산의 매각일 전일까지를 기간으로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6.5%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 마. 라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매각 이전시업연도의 최종일 익일부터 부동산의 매각일 전일까지를 기간으로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18%의 바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 바. 마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
- 7. 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 ①본 조 제6항 제②호에 따른 배당을 실시했으나 배당가능 이익이 부족하여 제②호 마목까지의 배당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종료한 경우 : 같은 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배당이 종료된 이후의 같은 순서대로 잔여재산을 분배한다(예를 들어, 같은 호 라목의 일부만 배당하고 종료되었다면, 잔여재산은 최우선적으로 같은 호 라목을 전부 충족시키고, 남은 재산으로 마목에 따라 분배하는 순서로 진행함).
- ②본 조 제6항 제②호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 제6항 제②호에서 정한바를 준용하여 분배한다.
 - 2017 년 11 월 09 일 설정 2017 년 11 월 09 일 등기
- ① 에이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다.
- ② 회사는 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이하 "매각 사업연도"라 한다)의 부동산 매각일의 직전일까지 발생한 배당가능이익(매각에 따른 회계상 처분이익, 당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된 제반 비용은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제외)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 1. 최우선으로,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에이종 종류주식 발행가액이 아닌 각 사업연도 (정관 제48조의 영업연도를 말하고 이하 같다) 1주당 보통주식 발행금액으로 계산한 1주의 발행가액으로 연 6.6%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누적적으로 배당한다. 단, 최초 주금을 납입한 사업연도에 발행한 에이종 종류주식에 관하여는 주금납입일 익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

642075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 2.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비종 종류주식 발행가액이 아닌 각 사업연도 1주당 보통주식 발행금액으로 계산한 1주의 발행가액으로 전호에 따른 에이종 종류주식을 우선 배당한 후 연 8.6%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누적적으로 배당한다. 단, 최초 주금을 납입한 사업연도 에 발행한 비종 종류주식에 관하여는 주금납입일 익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에이종 종류주식의 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7.0%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한다.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에이종 종류주식, 비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한다. 단, 에이종 및 비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은 2항 1호 및 2호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 회사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 및 "처분이익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을 다음 과 같이 배당한다.
- 1. 처분이익(아래에 정의됨)이 0보다 큰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 가. 배당가능이익 중 처분이익을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매각 사업연도 이전까지 누적된 미배당분을 최우선으로 배당한다.
- 나. 배당가능이익 중 처분이익을 가목에 따른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 후 잔여금액으로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매각 사업연도 이전까지 누적된 미배당분을 최우선으로 배당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처분이익은 그 55%는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25%는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20%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 "처분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당해 부동산의 처분가액 장부가액(유형자산평가이익 차감) 당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된 제반 비용(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관련 수수료를 포함한다) [유상감자대금 총액 + 주식발행비용 + 감가상각초과배당액 + 자본준비금전입액(감자차손전입액 제외) 유상감자주식 발행가액]
- 2. 매각 사업연도에 처분이익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이러한 배당가능이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 가. 우선 에이종 종류주식의 제2항 1호에서 정의한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 에이종 종 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제2항 2호에서 정의한의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라. 다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
- ④ 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 1. 에이종 및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3항 제2호 가,나에 따른 미배당금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을 배당한다.
- 2.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 1호에서 정의한 에이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에 이를 때까지 분배한다.
- 3.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정의한 발행가액에 이를 때까지 분배한다.

열람일시 : 2024년09월05일 09시48분54초

642075

- 4. 제1,2,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에이종 종류주식에 55%, 비종 종류주식에 25%를 분배한다.
- 5. 제1.2.3.4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식에 분배한다.

2021 년 09 월 14 일 변경 2021 년 09 월 15 일 등기

비종종류주식

주식의 종류 : 비종 종류주식

발행주식의 내용 : 2017년 11월 09일 발행 비(B)중 중류주식 1,000,000주

- 1. 회사가 발행할 비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다.
- 2. 회사는 비종 종류주식을 이천오백만(25,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 3. 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 ①화우선으로,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6.5%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단, 최초 사업연도에 발행한 에이종 종류주식에 관하여는 주금납입일 익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다만, 본 호는 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수렁한 사업연도(이하 "매각사업연도"라 한다)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만 적용하기로 한다.
- ②비중 종류주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전호에 따른 에이종 종류주식을 우선 배당한 후 연 18%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단, 최초 사업연도에 발행한 비종 종류주식에 관하여는 주금납입일 익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에이종 종류주식의 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다만, 본 호는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이하 "매각 사업연도"라 한다)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만 적용하기로 한다.
- ②제①호 및 제②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 4. 어느 사업연도에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제3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에이종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 다만, 본 항은 매각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만 적용하기로 한다. 5. 어느 사업연도에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후 비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제3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제3항에 정한 에이종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 후 비종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에 추가하여 배당한다. 다만, 본 항은 매각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만 적용하기로 한다.
- 6. 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에는 다음과 같이 배당한다.
- ①처분이익(아래에 정의됨)이 0보다 큰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 가. 배당가능이익 중 처분이익을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매각 사업연도 이전까지 누적된 미배당분을 최우선으로 배당한다.
- 나. 배당가능이익 중 처분이익을 가목에 따른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 후 잔여금액으로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매각 시업연도 이전까지 누적된 미배당분을 최우선으로 배당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처분이익은 그 20%는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55%는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25%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 ※ 본 조에서의 "처분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당해 부동산의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 , 당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된 제반 비용(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관련 수수료를

642075

포함한다),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된 주식발행비용, 매각 시점 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법 제 461조의 2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배당금 합계액, 매각 이전 사업연도별 당기순손실(감가상각비 제외)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②매각 사업연도에 처분이익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이러한 배당가능이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가. 우선 에이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하다.

나. 가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비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라. 다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매각 이전사업연도 의 최종일 익일부터 부동산의 매각일 전일까지를 기간으로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6.5%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마. 라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매각 이전사업연도의 최종일 익일부터 부동산의 매각일 전일까지를 기간으로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18%의 바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바. 마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바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

7. 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①본 조 제6항 제②호에 따른 배당을 실시했으나 배당가능 이익이 부족하여 제②호 마목까지의 배당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종료한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배당이 종료된 이후의 같은 순서대로 잔여재산을 분배한다(예를 들어, 같은 호 라목의 일부만 배당하고 종료되었다면, 잔여재산은 최우선적으로 같은 호 라목을 전부 충족시키고, 남은 재산으로 마목에 따라 분배하는 순서로 진행함).

②본 조 제6항 제②호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 제6항 제②호에서 정한바를 준용하여 분배한다.

2017 년 11 월 09 일 설정 2017 년 11 월 09 일 등기

- ① 비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다.
- ② 회사는 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이하 "매각 사업연도"라 한다)의 부동산 매각일의 직전일까지 발생한 배당가능이익(매각에 따른 회계상 처분이익, 당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된 제반 비용은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제외)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 1. 최우선으로,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에이종 종류주식 발행가액이 아닌 각 사업연도 (정관 제48조의 영업연도를 말하고 이하 같다) 1주당 보통주식 발행금액으로 계산한 1주의 발행가액으로 연 6.6%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누적적으로 배당한다. 단, 최초 주금을 납입한 사업연도에 발행한 에이종 종류주식에 관하여는 주금납입일 익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 2.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비종 종류주식 발행가액이 아닌 각 사업연도 1주당 보통주식 발행금액으로 계산한 1주의 발행가액으로 전호에 따른 에이종 종류주식을 우선 배당한 후 연 8.6%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누적적으로 배당한다. 단, 최초 주금을 납입한 사업연도 에 발행한 비종 종류주식에 관하여는 주금납입일 익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642075

대하여 에이종 종류주식의 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배당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7.0%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한다.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에이종 종류주식, 비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한다. 단, 에이종 및 비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은 2항 1호 및 2호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 회사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 및 "처분이익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을 다음 과 같이 배당한다.
- 1. 처분이익(아래에 정의됨)이 0보다 큰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 가. 배당가능이익 중 처분이익을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매각 사업연도 이전까지 누적된 미배당분을 최우선으로 배당한다.
- 나. 배당가능이익 중 처분이익을 가목에 따른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 후 잔여금액으로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매각 사업연도 이전까지 누적된 미배당분을 최우선으로 배당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처분이익은 그 55%는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25%는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20%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 ※ "처분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당해 부동산의 처분가액 장부가액(유형자산평가이익 차감) 당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된 제반 비용(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관련 수수료를 포함한다) [유상감자대금 총액 + 주식발행비용 + 감가상각초과배당액 + 자본준비금전입액(감자차손전입액 제외) 유상감자주식 발행가액]
- 2. 매각 사업연도에 처분이익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이러한 배당가능이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
- 가. 우선 에이종 종류주식의 제2항 1호에서 정의한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 에이종 종 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제2항 2호에서 정의한의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 라. 다목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
- ④ 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 1. 에이종 및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3항 제2호 가,나에 따른 미배당금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을 배당한다.
- 2. 에이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 1호에서 정의한 에이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에 이를 때까지 분배한다.
- 3. 비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정의한 발행가액에 이를 때까지 분배한다.
- 4. 제1,2,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에이종 종류주식에 55%. 비종 종류주식에 25%를 분배한다.
- 5. 제1,2,3,4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식에 분배한다.
 - 2021 년 09 월 14 일 변경 2021 년 09 월 15 일 등기

642075

기 타 사 항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성립연월일로부터 20 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3. 합병
- 4. 파산
-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의 취소
-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
-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성립연월일로부터 20 년

2021 년 09 월 14 일 폐지 2021 년 09 월 15 일 등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3. 합병
- 4. 파산
-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의 취소
-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
-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2021 년 09 월 15 일 경정 2021 년 09 월 23 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17 년 06 월 05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7 년 06 월 05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열 람 용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일시 : 2024년09월05일 09시48분54초

10/10